

2011년 7월 25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료문의 : 정기원 제품안전조사과장(02-509-7250), 운영상 연구사(7253)

스포츠용 구명복 및 비치볼 리콜조치

- 부력미달 구명복 및 유해물질 과다함유 비치볼은 리콜명령, 그 외 유해물질 초과 가능성이 있는 수영조끼 등은 자발적 리콜 -

- 기술표준원(원장: 허경)은 피서철을 맞이하여 많은 수요가 예상되고 안전사고시 사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물놀이 용품 및 여름용품 1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였다.
 - 이번 조사결과, 최소부력이 미달된 스포츠용 구명복 2개와 인체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가소제가 인체접촉 가능성이 높은 공기주입구와 상품전반에 걸쳐 기준치 이상 검출된 비치볼 1개에 대하여 리콜조치 한다고 밝혔다.
 - 그 외에 수영조끼(수영 보조용품)의 상표에서 프탈레이트계가소제가 기준보다 높게 검출된 제품 등 5개 제품은 제조사에 자발적인 리콜검토를 요청하였다.
- 스포츠용 구명복과 비치볼의 경우 이번 주부터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판매중지와 더불어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위해성을 즉시 공표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품안전기본법상 리콜명령을 발동하였다.

- 금번에 조사한 물놀이용품과 여름용품 112개 제품 중 8개 제품 (7.1%)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된 것은 작년대비 불합격율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.

- 이러한 불합격율의 증가는 물놀이기구에 대하여 인체유해물질 (프탈레이트계가소제 및 총 납 함유량 등) 함량제한이 안전기준에 신규로 반영되었고 함량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제품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.

* 최근 3년간 물놀이용품 부적합률: 10%('08) → 0%('09) → 2%('10)

- 또한 기술표준원은 금번 조사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 안전포털시스템(www.safetykorea.kr)에 공개하는 한편,
 -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유통 판매점이 가입하고 있는 위해 상품차단시스템에 해당제품 바코드 정보를 전송하여 전국 1만8천개 매장에서 판매를 차단한다.

붙임 : 안전성조사결과 리콜조치 대상제품

안전성조사결과 리콜조치 대상제품

□ 물놀이기구

제조(수입)업체	제조국	인증번호	모델명	기준	조사결과	제품사진
MITI CORPORATION (주)위니코니	중국	A071R003-0008	MT-B55	DINP 등의 경우 경고문구 표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0.1% 이하	경고문구 미표시 가소제(DINP) 검출 공기주입구 : 41.4% 본체 : 27.3%	

□ 스포츠용구명복(부력보조복)

제조(수입)업체	제조국	인증번호	모델명	기준	조사결과	제품사진
비앤씨	한국	B021H002-7001A	폰토스II 수영조끼	체중 30kg 이상 사용 최소부력: 35N 이상	20 ~ 25 kg 용 최소부력 : 34N	
ZHEJIANG SHEI YUNG HEN WATERSPORTS CO.,LTD 화창상사(주)	중국	B021R049-8001A	LIQUID FORCE VEST	최소부력 : 40N 이상	최소부력 : 24N	

* 스포츠용구명복 중 부력보조복의 경우 체중 30kg 이하 사용금지